

# “국내 감초재배 전망있다”

『감초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 심포지엄서 가능성 제기  
그러나 경제성과 재배타당성 검토 필수, 종묘구입 신중 기해야

한약처방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 국내 감초 연간 소비량은 식품용을 제외하고도 약3천여톤에 달하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중국의 감초생산은 주로 사막지방에서의 야생감초 재취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삼림보호를 위해 야생재취를 금지함에 따라 현지 가격이 계속 오를 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재배산만으로는 중국 자체 소비외에 외국 수출 물량 충당까지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국내 감초값 안정적 지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초재배 당위성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감초 등급별 국내 유통가격〉  
(‘99.10월 현재 600g 기준)

구 분	특 호	1호	2호	3호
수입원가	5,200	4,400	3,400	3,000
도매단가	8,000	6,000	5,000	4,500
소매단가	10,000	8,000	6,000	5,000

〈감초재배 소득성〉

10a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예측)	단가	조수익
800kg	1호320kg(40%)	4,500	1,440,000원
	2호480kg(60%)	3,500	1,680,000원
	800kg(100)		3,120,000원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주당건근중 80g, 10,000주/10a기준)

514종의 규격화 대상 한약재가 재분류돼 주요 용도가 의약품인 것은 제조업 등록업소에서만 제조되는 등 한약재규격화 정책이 대폭 강화, 정비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재배되는 품목 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은 자가규격 품으로 인정되거나 규격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식품으로 취급이 가능한 한약재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식품으로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약취급업소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약재의 음·식품원료

이와 때를 같이해 최근 강원대에서 열린 ‘국산감초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재고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감초를 국내에서 재배,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농촌진흥청 성낙술 연구관(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은 “국내에서 감초씨앗을 4월 하순~5월 상순에 파종해 40cm 길이의 모종으로 키운뒤 이듬해 지면에서 10cm 깊이의 육묘를



▲최근 강원대에서 열린 ‘국산감초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방안’ 심포지엄에서 성낙술 연구관은 감초가 농가소득 작목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30° 뉘어 심는 사식과 지면에 완전히 뉘어 심는 평식 등으로 재식해 2년만에 감초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성 연구관은 “98~99년까지 농진청 시험포와 강원 흥천·양구 등지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시험재배한 결과 농진청 시험포장의 경우 육묘이식 2년생의 수량성이 한포기당 120g으로 10a(300평)당 800~1000kg까지 생산이 가능해 중국재배 감초와 비슷한 생산성을 보였다는”고 설명했다.

특히 국산 감초 생산량은

10a(300평)에 800kg 이상으로 잡고 국산 감초 1kg의 판매단가를 중국산 감초 수입단가 수준인 4천5백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312만 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감초재배에 뛰어드는 것은 금물. 성 연구관은 특히 “감초 포복경(감초 본뿌리 외에 지하부에서 자라는 줄기)을 분양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토양 및 기후 특성상 포복경을 심으면 줄기만 무성할

뿐 뿐이가 가늘어 상품성 있는 감초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감초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현재 감초재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 등 재배타당성이 규명된 뒤 재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농진청은 현재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포복경이 아닌 씨앗으로 국내에서의 감초 재배여부를 연구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쯤이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초심포지엄에서는 감초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신소재 개발부문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제시됐다. 강원대 이현용 교수(식품생명공학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초의 주소비 방법인 한약의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감초의 기능 성분들을 이용한 천연감미료나 식·음료, 식품첨가제 등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식품 혹은 식품소재로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또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서 국내에서 감초재배가 본격화됐을 시 안정적인 수요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감초재배는 토양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물과 햇빛에 민감한 작물이라서 일조량이 충분하고 물빠짐이 좋으면 토심 깊은 사질양토가 좋고 비가 많은 지역이나 자갈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문의전화: 0331-290-6718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 중독우려 없는 국산 한약재 농민 자가포장 판매 허용키로

사용과 관련해선 식품공전에 식품원료 수재품목을 확대해 사업자들의 원료확보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원료로 사용을 불허하는 품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식품원료의 사용을 위해 신청절차와 심사방법등에 관한 법적근거 확보와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확보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한약재 규제화제도에 대해 현행 제조업 허가제를 일정 범위 내 시설기준을 완화한 등록제로 전환해 도매상 등의 자가규격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품목신고후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국내농민이 생산한 품목 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규격을 인정하는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장기방안에서는 ‘약사법’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상 생약, 한약, 한약제제, 한약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약재의 유형을 구분해 ‘약사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관리법’ 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을 오는 12월까지 보고토록 복지부에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의 이같은 방

안은 국내 한약재 생산농민에게는 규격품 제조 및 판로를 열어준 측면이 강하지만 주된용도가 의약품인 한약재의 경우 제조업 등록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하고 있어 한약재 규격화 요건을 실제로는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수입한 약재 품질검사에선 제조업 소가 수입하는 한약재도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한약재와 동일하게 품질검사를하거나, 아니면 자가품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한약재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제도는 한약을 고온에서 4~5시간 달여 복용하는 현실을 감안 한약재 기원별 중금속과 표백제 허용치를 차별화 하는 등 한약재 특성에 맞는 개별 허용적정치를 설정토록 했다.

또한 한약재 품질관리는 재배 생산과정에서부터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지도, 관리할 독립기구를 만들던지 생산단체에서는 농림부와 농진청이 의약품 단계에선 식약청이 각각 품질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요구하고 사안별 시행 및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했다.